

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7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9. 1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정부의 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에 맞게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문내용 삭제(안 제4조)
- 나.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 정비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규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5년 8월 3일 ~ 8월 17일(15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부서협의 기간 : 2015년 8월 3일 ~ 8월 17일(15일간)
- 나. 협의내용
 - 성별영향분석평가(사회복지과) : 해당없음

9. 기타 참고사항

-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”를 “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”라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”를 “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

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등)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 다만, 결상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환경보호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환경보호과장 박건석
	팀장 직위·성명	환경관리팀장 김현아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임영보 (790-5581)

신·구조문대비표
 < 관계법령 발췌서 >

현행	개정안
<p>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</p>	<p>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</p>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<u>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<u>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</u>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<u>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</u> ----- -----</p>
<p>제2조 (세입)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</p> <p>4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세입) 이 <u>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</u> 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 (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등)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,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<u>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</u>. 다만,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</p>	<p>제4조(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등)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은 <u>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</u>. 다만, 결상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</p>

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16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31., 2014.1.28.>

② 특별회계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